

2024년 산림교육전문가 상근자 모집 공고

2024년 에코아이의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에 함께 참여할 산림교육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1. 모집 개요

1) 지역 및 모집 인원

지역	장소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모집 인원
서울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원 우면산 유아숲체험원 방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0명
서울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원 해찬솔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0명
서울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상도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0명
서울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0명

※지원자 미달시 위탁사업 제안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기간 : 2024년 3월 ~ 11월(지자체와 계약상황에 따라 근무 날짜가 변동될 수 있음.)

3) 업무 내용

- 유아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기획·교육 진행)
- 숲체험 영상 제작
- 근무일지, 활동사진 정리 및 실적 보고
- 유아숲체험원 동식물 모니터링
- 유아숲체험원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활동
- 유아숲지도사 교육생 실습 지도 및 관리
- 기타 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업무

2. 접수 및 채용

1) 접수 기간 : 2024. 02. 05(월) ~ 2024. 02. 12(월)

2) 접수 방법 : 서류 이메일 제출 (eco-i@hanmail.net)

3) 문의 :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02-2666-0002, 평일 10:00~17:00)

구분	일정	비고
접수 기간	2024. 02. 5(월)~ 2024. 02. 12(월)	이메일(18시까지 도착에 한함)
서류 합격자 통보	2024. 02. 13(화)이후 개별 통보	개별 유선통보
면접	개별 통보	* 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 시연 진행 여부 통보

※ 최종합격자는 에코아이 정회원 가입 필수!

※ 탈락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평가기준 유출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3. 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인솔하거나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청각·시각,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과거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 관련 벌금형·구금형을 선고받은 자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취소
-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단 야간대학생은 제외

4. 근로 조건(보수 등)

- 급여(산림청 지급 기준, 7시간 또는 8시간 근무)
- 4대보험 가입
- 가족 프로그램, 숲체험 행사의 경우 주말(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주말(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제공.
 - ※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 사업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5. 제출서류

붙임1. 제출서류 1부

- ※ 파일명 및 파일형식(hwp) 변경 금지 (서명은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 ※ 한글 파일로 제출바람
- ※ 숲교육 관련 교육 이수증, 직무교육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모두 제출 바람
- ※ 자격증 미발급자는 이수증명서로 대체 가능

6. 기타 사항

- 본 위탁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위탁심사를 거쳐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가 최종 위탁체로 결정될 경우에 근무를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탈락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평가기준 유출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위탁사업 확정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본인과 비슷한 경력의 대체 근무자를 추천 후 대체인력 채용확정시 퇴사 가능. (개인사정으로 인한 당일 퇴사 불가)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됨.